

정신건강통합센터(가칭)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22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2월 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정신질환자를 위한 문화·교육·당사자 활동 등 지역밀착형 정신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통합센터(가칭)를 운영하고자 하며,
- 나.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정신건강통합센터(가칭) 운영
- 소재지 : 서울시 (예정)
 - 시설규모 : 990 ~ 1,650㎡
 - 공간구성 : 주간재활시설(50인), 프로그램실, 다목적 강당, 식당, 사무실, 상담실, 직업재활실 등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
 -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필요성

-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, 인구 수 대비 부족('18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중 약 13.3%가 이용)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통합서비스가 확대가 필요
- 특히 주간재활시설의 경우 현재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정신건강복지법 제33조~3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약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당사자 중심의 문화·예술·교육·건강 등 통합복지서비스 운영
 - 수준별, 대상자별 프로그램, 당사자 및 가족 동아리 활동 등
-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시설 운영(50인 시설) : 일상생활 훈련, 사례관리 등
-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 등 취업지원
 - 개인별 직업 능력 평가, 전문인력 양성, 직업교육, 고용연계 등
-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
 - 정신건강강좌,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캠페인, 정신건강한마당 등
-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

라. 위탁기간 : 3년('21. 8. 1. ~ '24. 7. 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바. 소요예산 : 1,462,417천원('21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정신건강복지법

제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>

제27조(정신재활시설의 종류)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재활훈련시설 :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·교육·취업·여가·문화·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

제33조(복지서비스의 개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34조(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5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별로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36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7조(지역사회 거주·치료·재활 등 통합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8조(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
제9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재활훈련시설 :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·교육·취업·여가·문화·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

5. 종합시설 :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·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

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주은지 (☎2133-7558)